

**2025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기본 계획(안)**

**2025.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 목 차 】

I. 추진개요 .....	1
II. 추진체계 및 과제 .....	3
III. 세부 추진 계획 .....	4
1. 과제1: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	4
2. 과제2: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	7
3. 과제3:선행학습 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 .....	12
IV. 예산 지원 계획 .....	17
V. 향후 추진 계획 .....	18

# I 추진 개요

## □ 추진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10P.>

-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평가하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교육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 조사 대상 자료 :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 □ 추진배경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14.9.)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출제문항 등 점검

## □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추진경과

- 「공교육정상화법」제정('14.3.)으로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초·중·고 선행교육 출제 점검 및 대학별 고사 분석·지원('15~'19.)
- 코로나 19 대응, 교육회복 집중 및 학교부담 완화를 위해 선행출제 점검 전면 취소('20.~'21.)
- '22년부터 학교별 자체점검(1·2학기), 교육청 주관 점검(2학기) 실시
  - ※ 중학교 2·3학년, 고1 실시

##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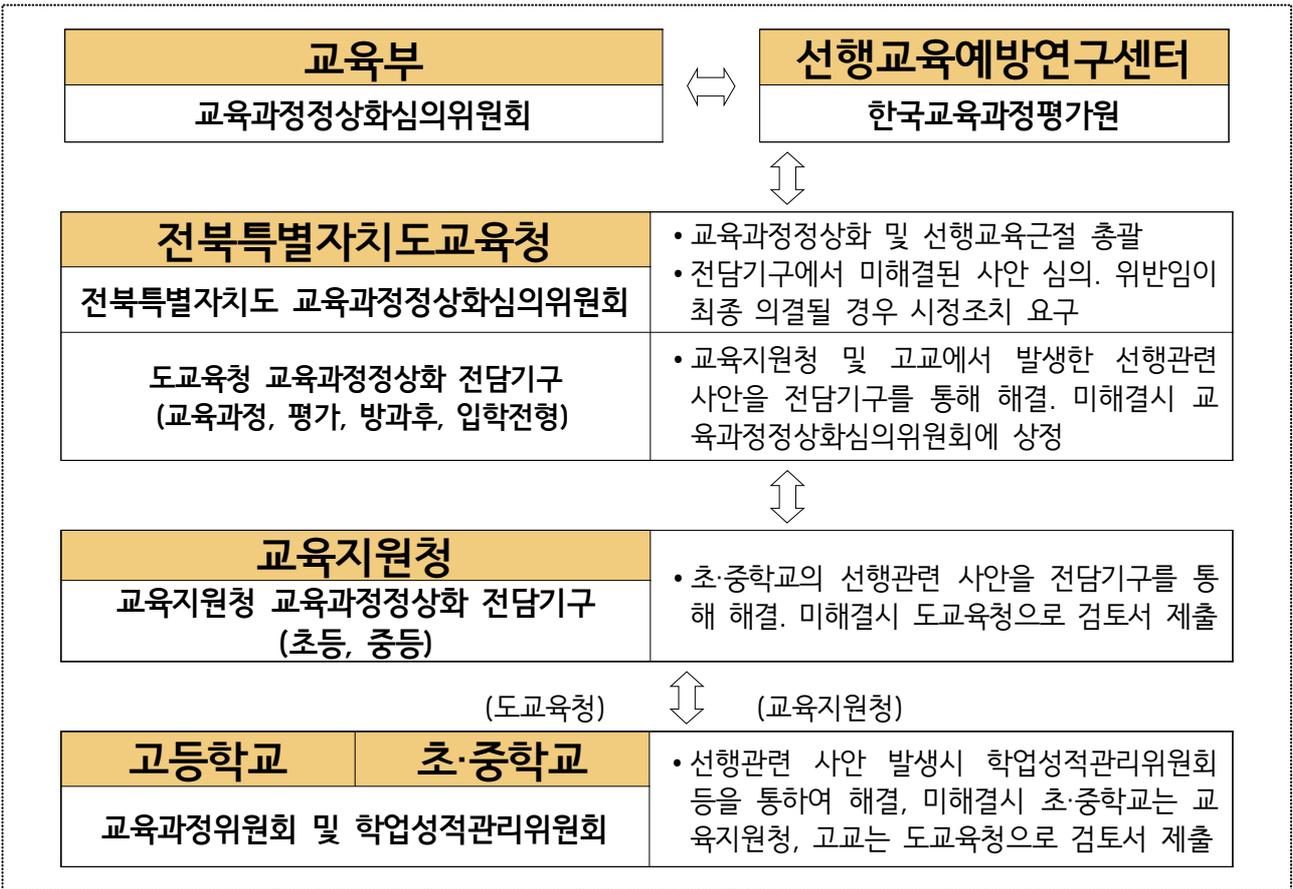
- (기간) '25. 3. ~ '26. 2.
- (대상) 교육지원청, 도내 초·중·고등학교
- (내용)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출제문항 점검 등

##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 II 추진 체계 및 과제

### □ 추진 체계



### □ 추진 과제

비전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목표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선행학습 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제	<b>지원체제 구축</b>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선행교육예방 홈페이지 구축·운영 ③ 학원 지도 및 점검	<b>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검토 강화</b> ① 교육과정 운영평가 검토 ② 입학전형 감독 강화 ③ 입학예정자 대상 검토 ④ 방과후학교 운영점검 ⑤ 위반 시 조치사항	<b>연수 및 홍보 강화</b> ① 교원 연수 강화 ② 학부모 교육 강화 ③ 선행 교육 예방 홍보

### Ⅲ 세부추진계획

#### 과제1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 1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제6기) 구성

- 임기 : 2025. 1. 1. ~ 2026. 12. 31.(2년)
- 위원 수 : 위원장 1명(교육감 임명 또는 위촉), 부위원장 1명(위원장이 지명) 포함 14명으로 구성
- 자격 : 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전문가(교육과정, 학습이론, 대학입학전형 등 분야),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 심사·의결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선행 교육 또는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운영
  -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회기) 학기별로 1회 소집. 단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
  - (통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
  -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관련자 출석 요구)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전문가, 학습이론 전문가, 각급 학교 교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선행학습의 범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련 학회에 자문 가능

- 전담기구의 업무담당자는 출석하여 검토서 설명
- (수당 등 지급) 회의 참석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 (심의 결과)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감은 심의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 재심 요청하고 재심 결과 수용

## 2.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 전담기구 운영

- 목적 : 교육지원청 혹은 고등학교에서 미해결된 위반(의심) 사안의 해결
- 구성 : 초·중등교육과정 · 평가 · 입학전형 ·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 절차
  - 고등학교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검토서 접수
  - 각 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해결 노력
  - 사안 해결 시 필요할 경우 업무 담당자는 관련 교과별 혹은 업무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학교 또는 문제 제기인 중 어느 한쪽이 수용하면 종료
  - 미해결 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사안의 경과를 담은 검토서 작성·제출

## 3. 교육지원청 교육과정정상화 전담기구 운영

- 목적 : 관내 초·중학교에서 미해결된 위반(의심) 사안의 해결
- 구성 : 교육지원청 내 업무담당자(교육지원청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
- 절차
  - 관내 초·중학교에서 미해결되어 제출된 검토서 접수
  - 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해결 노력
  - 사안 해결 시 필요할 경우 업무 담당자는 관련 교과별 혹은 업무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학교 또는 문제 제기인 중 어느 한쪽이 수용하면 종료
  - 미해결 시 도교육청 전담기구에 사안의 경과를 담은 검토서 작성·제출

## 4. 학교별 위원회 운영

- 목적 : 학교 내 선행 관련 사안의 해결
- 구분
  - 평가관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교육과정(입학전형, 방과후학교)관련 → 교육과정위원회 개최
- ※ 학교장은 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심의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절차
  - 학교 내 발생한 사안에 대한 회의 개최
  - 학교는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해결 노력
  - 학교 또는 문제 제기인 중 어느 한쪽이 수용하면 종료
  - 미해결 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전담기구,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전담 기구에 검토서 제출

### ② 선행교육예방 홈페이지 구축운영

- 명칭 : 공교육정상화법
- 경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 메인화면 / 교육청안내/조직청사안내/부서별홈페이지/중등교육과/업무마당/공교육정상화법](#)
- 내용
  - 연도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기본 계획
  - 단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행 교육 및 선행 출제에 관한 대상별 연수 자료 안내

### ③ 학원 지도 및 점검 [창의인재교육과]

- 금지내용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 상시점검 실시
  - (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점검 시기) 연중
  - (점검 방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 특별점검 실시 : 행정지도 이후에도 선행학습 광고 계속하는 경우 특별 점검 실시

## 과제2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 계획

#### ○ 추진 방향

- 1학기는 선행학습 출제 관련 학교 자체 점검 체계 유지
- 2학기는 선행학습 유발 우려가 높은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 점검 추진

#### ○ 교육과정 편성·운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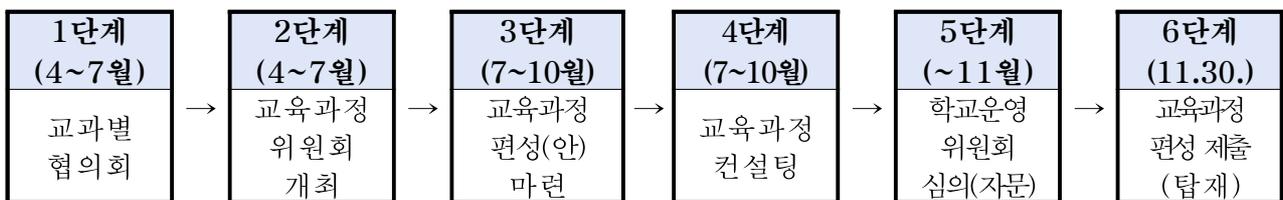
##### ※ 교육지원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

- (검토대상) 모든 초·중·고등학교
- (검토기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침 및 편성 방향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여부
- (검토방법)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체크리스트(별도 안내)를 작성하여 활용
  -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고등학교 편성표 검토 및 컨설팅 실시
  -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내 초·중학교 편성표 검토 및 컨설팅 실시
- (검토시기) 매년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 제출 시(7~10월)

####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차기 학년도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편성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고등학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절차 : 정기)



- (편성표 제출 방법 : 별도의 공문으로는 제출하지 않음)
  - 초등학교 : 교육지원청의 자체 계획에 따름
  - 중 학교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참고자료 1)에 탑재
  - 고등학교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고등학교 자료 탑재 위치 : [교육정보/교육과정도우미/교육과정자료실/고등학교교육과정](#)

※ **교육과정 편성표 수정**

- (수정절차)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한 교육과정 편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과협의회 → 교육과정위원회 → 교육과정 컨설팅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변경사항 보고·탑재 → 학부모 안내

\* 상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참고

○ **초·중등학교 선행교육·출제 검토(평가문항)**

- ※ 학교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출제 단계에서 선행출제 등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자체 관리 강화
- ※ 1학기 학교 자체 점검, 2학기 학교 자체 점검 및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
- ※ 2학기에는 교육(지원)청 주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학 평가문항 점검 예정
- ※ 다음 사항은 학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데 참고하기 바람

- 개요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 1학기 및 2학기 구분 점검 (1학기) 학교 자체점검1회 (2학기) 학교 자체점검1회 +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1회	
학교자체점검		- 매학기 전 교과 자체점검 추진 ※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에 따른 적용배제 과목 제외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 대상	학년	2, 3학년	1학년
	과목	(2학기) 수학, 과학	(2학기) 수학, 과학
	주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내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선행교육)교육과정편성과 교수학습·평가 계획의 일치 여부(정보 공시 자료)	
		(선행출제)선행학습 유발 여부(지필평가 출제문항)	
주요 자료		- 학교교육과정 편성표 - 교수학습·평가 계획서 - 정기고사 출제문항	

※ **학교자체 점검은 초·중·고 전 교과를 대상으로 추진**

(단, 공교육정상화법 제 16조에 따라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제외)

※ **특수학교 및 특성화고는 제외**

- 검토방법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선행교육예방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운영·평가 검토단을 구성하여 관내 중학교 검토 실시  
→ 도교육청에 검토 결과 제출 → 교육부에 중학교 검토 결과 제출
  - (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영·평가 검토단을 구성하여 고등학교 검토 실시  
→ 교육부에 고등학교 검토 결과 제출

## ○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 사전 예방 및 출제관리 강화
  - 학교 내 사전 예방 노력 강화
  - 출제 및 검토 단계에서 선행출제 등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 강화
  -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금지' 관련 출제 전 교사 연수 실시

### (권장사항)

- 시험출제 전 '선행출제 금지' 교사 연수 강화
- '동교과협의회' 등의 선행 출제여부 상호 검토 및 회의록 작성
- 원안지 학교장 결재 시 문항정보표에 '선행출제여부' 항목 추가 등

- 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자체 검토 강화
  -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검토
  -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평가 계획 검토, 선행교육 (재학생, 입학예정학생)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문항(지필·수행, 각종 교내 대회 등) 자체 검토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학교 2025년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제외(예정)

## ○ 위반 사례 결과 처리

- 선행교육·출제 관련 편성·운영·평가 불일치 및 부적합 학교
  - 시정조치 요구 → 컨설팅 → 이행계획서 제출 →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보고(또는 상정)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제14조) 불이행 시 법령에 따라 처리(징계의결요구, 행정처분 등)
    - ※ 학교운영경비 10% 내 삭감 혹은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 등
  - (시행령 제15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정처분 가능
    - ※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나 위반 사례가 있었던 학교는 실태 수시 검토

## ② 입학전형 감독 강화

### ○ 상급학교 입학 전형 운영 지도

- 학교의 입학 전형 내용과 범위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전형 여부
- 학교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반영 여부
- 학교 밖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사설기관 주최 캠프 등 학교생활기록부 유의사항 반영 여부

### ○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 (해당학교)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특성화중, 자율중, 특목고, 자사고 등)
- (실시주체) 입학전형 실시 학교의 장
- (실시기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
- (환류)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에 지도·조언·권고

### ○ 결과 :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사안 제출

## ③ 입학예정자 대상 교육과정 검토 [중등교육과]

○ 대상 : 중·고등학교 전체

○ 시기 : 신입생 배정 이후

○ 기준 : 입학(3월 1일) 전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중학교) 입학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배치 고사에서 입학 직전 학교급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
-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배치 고사에서 입학 직전 학교급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
- 방법 :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등 추후 통보
- 결과 :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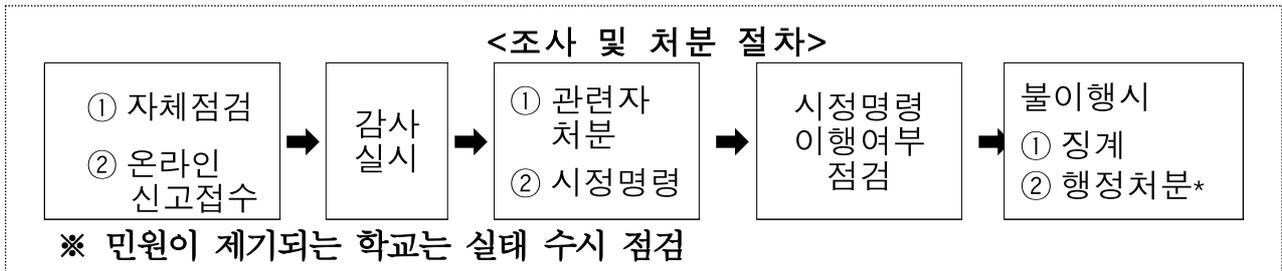
#### 4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강화 [미래교육과]

-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및 운영 점검
  -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 (점검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점검 프로그램)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점검방법)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병행
  - (점검결과)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컨설팅 내용
  -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양
- 컨설팅 시기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5 위반 시 제재 조치

- 위반 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참고자료2】
  - 징계 요건 :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착오 또는 경과실에 의한 경우(감봉, 견책)
    - (중징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파면, 해임, 강등, 정직)
  -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위반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시행령 및 매뉴얼 북 부록 참고)
  -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간 위반 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위반 행위와 정도에 따라 학교운영경비의 5~20% 삭감(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정지)
-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 2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에 따름



### **과제3** 선행학습 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

#### **1** 교원 연수 강화

- 목적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진방법 : 교육청(본청 및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별로 실시
- 초·중·고등학교 교원 연수

주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	전체 교원
횟수	학기별 1회 이상
방법	연수 계획 수립(내부 결재) 후 실시 집합연수(30분 이상)
기타	교육지원청, 학교 자체 연수 시행공문 및 참가자 등록부는 각 기관에서 보관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분석 역량 강화 연수
  - 대상자 :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단 및 선행교육예방지원단
  - 내용 : 공교육정상화법 취지 이해 등 선행교육 예방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현장 사례 검토 및 컨설팅 역량 제고
  - 주관 : 중등교육과

#### **2** 학부모 연수 강화

- 목적 : 사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
- 추진방법 :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별로 실시
- 연수내용 : 선행학습 인식 개선 및 부모의 역할을 반영

○ 학부모 연수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선행교육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진행
-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일반고에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주체	- 전체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대상	- 학교 : 전체 학부모 대상 - 교육지원청 : 관내 학부모 대상
횟수	- <b>학기별 1회</b> 이상
방법	- 연수 계획 수립(내부 결재) 후 실시 - 직접 연수 혹은 리플릿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게재,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회의 등 - 동영상·방송 활용 :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탑재, 다큐멘터리 시청
기타	- 전북학부모지원센터( <a href="http://www.jbe.go.kr/parents">http://www.jbe.go.kr/parents</a> ) : 관련 행사 시 홍보 - 교육지원청, 학교 자체 연수 시행공문 및 참가자 등록부는 각 기관에서 보관

3 선행교육 예방 홍보 및 선행교육·출제 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 홍보 자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인화면 / 교육청안내/조직 청사안내/부서별홈페이지/중등교육과/업무마당/공교육정상화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공교육정상화법홍보자료](#)

○ 선행교육·출제 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 ☎ 063-239-3320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업무담당자

## [참고자료1]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

※ 각 중학교의 교육과정편성운영표가 탑재되어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자료실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자료실 링크	문의
<a href="#">전주</a>	<a href="#">전주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270-6080
<a href="#">군산</a>	<a href="#">군산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450-2640
<a href="#">익산</a>	<a href="#">익산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850-8830
<a href="#">정읍</a>	<a href="#">정읍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530-3021
<a href="#">남원</a>	<a href="#">남원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620-7831
<a href="#">김제</a>	<a href="#">김제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540-2571
<a href="#">완주</a>	<a href="#">완주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270-7620
<a href="#">진안</a>	<a href="#">진안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430-6222
<a href="#">무주</a>	<a href="#">무주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320-5132
<a href="#">장수</a>	<a href="#">장수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350-5220
<a href="#">임실</a>	<a href="#">임실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640-3512
<a href="#">순창</a>	<a href="#">순창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650-6180
<a href="#">고창</a>	<a href="#">고창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560-1680
<a href="#">부안</a>	<a href="#">부안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자료실</a>	063-580-7423

※ 일부 지역은 교육과정 담당자와 평가 업무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음.

※ 해당 교육지원청 내부적으로 업무조정 등에 의해 전화번호가 달라질 수 있음.

## [참고자료 2]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 제12조) 심사·의결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방과후 학교 포함)
  -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중·고 입학시험 포함)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b>(법 제8조)</b>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input type="checkbox"/> <b>(시행령 제3조)</b> 입학예정 학생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li> <li>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li> </ol>
<input type="checkbox"/> <b>(법 제11조, 제12조)</b>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input type="checkbox"/> <b>(법 14조)</b>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참고자료 3]

2025학년도 ( )학기 선행교육 예방 체크리스트

학교명		점검일자	
작성자	(서명)	확인자(교감)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0,X)	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학년(군), 학 교급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하였는가?		
	- (정규 교과 교육에서)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는 교과목 을 신설 및 편성하는 경우, 학교에서 교육청의 인증 절차 를 준수하였는가?		
	-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편성 하였는가?(고등학교 수학, 과학)		
	○ 학교교육과정 편성과목과 운영과목이 일치하는가?		
	○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교과목 내 단원 간 위계가 있는 경우, 단원 간 위계를 고려 하여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중학교·고등학교 수학)		
	○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앞선 다음 학기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는가?		
○ 학교교육과정 편성보다 학기 단위를 앞서는 운영의 불일치 는 없는가?			
평가	○ 학업성적관리규정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 과목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필 평가 문항의 성취기준과 문항정보표의 성취기준이 일 치하는가?		
	○ 지필 평가 문항에 교육과정을 앞선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 수행 평가 세부 영역이나 채점기준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 평가 영역, 요소(내용), 방법, 횟수 등에 대한 교과협의회를 실시하였는가?		
	○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하고 수업에서 다른 성취기준에 앞선 평가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았는가?		
	○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 는가?		
	○ 평가 내용의 학기별, 학년별 교육과정 편제를 준수하였는가?		
	- 문항정보표 및 채점기준안의 성취기준이 교과 진도 운영계 획에 나타난 성취기준 범위 내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 평가 내용에 다음 학기, 혹은 다음 학년도에 학습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		
기타	○ 입학 전 신입생 교과프로그램 및 반배치고사 등을 이전 학교 급의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는가?		
	○ 교원 대상 선행교육 예방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 예방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 '0' 표시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음을 의미함.

향후 조치 계획	
----------------	--

## IV 예산 지원 계획

### 1 예산 총괄

(단위: 천원)

사업 내역	산출 기초	계	비고
고등학교 선행교육출제검토	검토수당 및 운영비	21,600	특교
초·중학교 선행교육출제검토	검토수당 및 운영비(14청)	49,200	자체비
시·도 분담금	공교육정상화 현장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34,100	특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합계		104,900	

### 2 지역별 재배정 예산안

#### 2025학년도 선행학습유발 금지(재배정)

	초등학교수	중학교수	재배정 예정금액(원)	비고
전주	75	41	7,500,000	
군산	55	19	4,000,000	
익산	60	26	6,000,000	
정읍	34	19	4,000,000	
남원	27	13	3,500,000	
김제	34	13	3,000,000	
완주	30	13	3,000,000	
진안	13	10	2,600,000	
무주	10	6	2,300,000	
장수	9	7	2,300,000	
임실	15	9	2,500,000	
순창	15	7	2,500,000	
고창	21	14	3,000,000	
부안	20	12	3,000,000	
계			49,200,000	

## V 향후 추진 계획

### □ 향후 계획

- 2025학년도 교육과정·평가문항 검토 계획 공문 시행\*(2025. 5월)  
 ※ 중학교 문항점검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문항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주관
-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방지를 위한 연수·홍보(2025. 3월~)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개최
- 검토 및 위반 사례가 있는 학교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25. 3월	도교육청
	· '25학년도 점검계획서 제출	'25. 6월	도교육청→교육부
1 학 기	· 1학기 점검 실시	'25. 6~7월	학교 자체 점검
	· 위반 사례 시정명령 및 후속조치	'25. 7~8월	도교육청→학교
	· 후속조치 결과 제출	'25. 8. 31.	도교육청→교육부
	· 후속조치 점검 및 분석	'25. 9월	교육부
2 학 기	· 2학기 점검 실시	'25. 9~12월	학교 자체 점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위반 사례 시정명령 및 후속조치	'25. 12월	도교육청→학교
	· 후속조치 결과 제출	'26. 2. 28.	도교육청→교육부
	· 후속조치 점검 및 분석	'26. 3~4월	교육부

### □ 행정사항

- 지역교육청
  - 교육과정정상화 전담기구(초, 중등) 재정비
  - 2025 교육과정·평가문항 검토 계획 수립\*(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단 및 선행교육예방지원단 구성 등)
- ※ 초등학교는 자체 점검, 중학교 2,3학년 수학, 과학 과목에 한해 2학기 문항 점검 실시



<서식2>

## 이행명령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한 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내용-교육과정 운영 또는 평가 내용 상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명령내용

위 결정 내용에 대한 변경 조치를 완료한 후 년 월 일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참고사항>

※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063-239-3318)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교육정상화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서식3>

## 이행결과보고서

1. 이행 기관

학교명 : ○ ○ ○

학교장: ○ ○ ○

2. 심의 결과 통보 내용

3. 심의 이행 과정 및 결과

교육감 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거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서식4>

## 재 심 의 결 과 통 보 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서면입니다.

본 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일 :

2. 이의신청 내용 :

3. 재심의 일 :

4. 재심의 결과 :

-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교원 징계(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
- 행정 처분(공교육정상화법 제15조)

※ 시정 또는 변경명령(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 ①②③,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참고사항>

※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이행하고 이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14조 2항.3항)

<서식5>

## 재 심 의 결 과 이 행 보 고 서

1. 이행 기관

학교명 : ○ ○ ○

학교장: ○ ○ ○

2. 재심의 결과 통보 내용

3. 재심의 이행 과정 및 결과

교육감 재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거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